C - 91 - 2015

- (13) ACS(Auto Climbing System)폼에는 소화전설비를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ACS폼의 크기 및 공간에 합당한 능력단위를 갖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.
- (14) 소화전 설치를 위하여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부위에 가설 저수조의 위치를 설정하고 낙차를 이용하거나 가압송수장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, 동결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15) 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(16) 소화기구 및 소화전을 설치한 장소에는 그의 사용법 및 화재발생 시 대응 방법을 기록하여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 두어야 한다.



<사진 3> 소화전 설치 전경



<사진 4> 소화기 사용방법 게시(예)

- (17) 각 작업장에서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상단에 가로 360밀리미터 세로 120밀리미터 이상의 피난구 유도표지를 하여야 하며, 작업장 각 위치에서 피난구 유도표지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 내부 칸막이 등의 구획으로 피난구 유도표지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로 250밀리미터 세로 85밀리미터 이상의 복도통로 유도표지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 및 보행거리 15미터이내 마다 설치하여 피난구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.
- (18) 피난구 유도표지 및 통로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쉽게 변형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.